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 흰돌요양센터(2025)

제 7 장 운 영

제4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48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및 방문 상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4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입소자의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 2, 3, 4, 5 시설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정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실시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대해서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을 **따르며, 매년 변경되는 시설의 입소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는 <별표 8-3>과 같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절차 안내는 유선(무선포함),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제5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5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5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2. 촉탁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촉탁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촉탁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촉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촉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⑤ 촉탁의 진찰비용은 수급자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촉탁의 진찰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 부담률(0~20%)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촉탁의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협조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들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5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 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제56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1.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제57조 9항과 관련 시설장은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제57조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 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입소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수영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시설의 장
 - ② 시설 입소자 대표
 - ③ 시설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 하도록 하고, 수시회의는 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⑤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⑥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10.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설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11. 위 1항~10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8-3>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및 식사재료비/간식비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및 식사재료비/간식비 안내문]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01월 01일자로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됨에 따른 변경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등 급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2.1:1)		2025년 수가(2.3:1)	
	1일	30일	1일	30일	1일	30일
1등급	84,240원	2,527,200원	90,450원	2,713,500원	86,030원	2,580,900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83,910원	2,517,300원	79,810원	2,394,300원
3,4,5등급	73,800원	2,214,000원	79,240원	2,377,200원	75,360원	2,260,800원

2. 2025년 수가에 따른 본인 부담금

1) 세부내역(30일 기준) 1등급(2.1: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3,040,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170,800	
	요양급여비용(80%)	2,170,800	$90,450 \times 30\text{일} \times 80\% = 2,170,800\text{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69,700	
	요양급여비용(20%)	542,700	$90,450 \times 30\text{일} \times 20\% = 542,700\text{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text{식}) \times 30\text{일} = 297,000\text{원}$ $1,000(1\text{일}) \times 30\text{일} = 30,000\text{원}$

1-1) 세부내역(30일 기준) 1등급(2.3: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907,9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064,720	
	요양급여비용(80%)	2,064,720	$86,030 \times 30\text{일} \times 80\% = 2,064,720\text{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43,180	
	요양급여비용(20%)	516,180	$86,030 \times 30\text{일} \times 20\% = 516,180\text{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text{식}) \times 30\text{일} = 297,000\text{원}$ $1,000(1\text{일}) \times 30\text{일} = 30,000\text{원}$

2) 세부내역(30일 기준) 2등급(2.1: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844,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013,840	
	요양급여비용(80%)	2,013,840	83,910*30일*80%=2,013,840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30,460	
	요양급여비용(20%)	503,460	83,910*30*20%=503,46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식)*30일= 297,000원 1,000(1일)*30일= 30,000원

2-2) 세부내역(30일 기준) 2등급(2.3: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721,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15,440	
	요양급여비용(80%)	1,915,440	79,810*30일*80%=1,915,440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05,860	
	요양급여비용(20%)	478,860	79,810*30*20%=478,86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식)*30일= 297,000원 1,000(1일)*30일= 30,000원

3) 세부내역(30일 기준) 3,4,5등급(2.1: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704,2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01,760	
	요양급여비용(80%)	1,901,760	79,240*30*80%=1,901,760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02,440	
	요양급여비용(20%)	475,440	79,240*30*20%=475,44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식)*30일= 297,000원 1,000(1일)*30일= 30,000원

3-3) 세부내역(30일 기준) 3,4,5등급(2.3:1)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587,8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808,640	
	요양급여비용(80%)	1,808,640	75,360*30*80%=1,808,640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779,160	
	요양급여비용(20%)	452,160	75,360*30*20%=452,16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97,000 30,000	9,900(3식)*30일= 297,000원 1,000(1일)*30일= 30,000원

문의전화 051) 751-0561

흰돌요양센터